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관명 (부서명)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되어,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단,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대학원 등에서 평생교육 전공 석·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나.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안 제8조의3)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보수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7조의2 및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진흥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OOOO. OO. OO. ~ OO. OO.)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은 평생교육기관등에서 해당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에서 평생교육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3(보수교육기관)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된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생 략) <u><신 설></u>	제8조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평 생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은 평생교육기관등에서 해당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u> <u>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해당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u> <u>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등에서 평생교육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u> <u>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u> <u>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u>

<신 설>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3(보수교육기관) ① 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수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된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보수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면제 신청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자격 등급 평생교육사 급	자격증 번호
	소속 기관	연락처
	기관 소재지	

면제 사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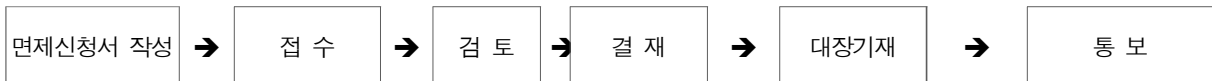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수교육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보수교육기관

제 호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5.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시간

위 사람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기관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82